

제222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2016.12.12. · 12.14.)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차 상 옥]

〔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6. 11. 17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5. 11. 21

2. 제안사유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각 기금별 기금 설치·운용조례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각 부서에서 설치·운영 중인 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거창군에서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거창군의회에 승인을 받기 위함.

3. 2017년도 기금개요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나. 운용방침

-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임.

- 자금 운용체계를 총괄부서와 운영부서로 이원화하여 책임성·투명성 확보
 - 총괄부서: 기획감사실
 - 운용부서: 각 기금관리운용 부서
-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운용

4. 기금운용 계획안 규모

(단위: 천원)

기금명	2016년말 현재액 ①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7년도 말 조성액 ④=①+②-③	증감
		수입 ②	지출 ③		
합계 (2개)	1,087,013	549,400	481,700	1,154,713	67,700
재난관리기금	858,216	525,000	477,000	906,216	48,000
옥외광고물정비기금	228,797	24,400	4,700	248,497	19,700

5. 검토의견

■ 재난관리기금(p69)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따라 재난예방 시설 설치 및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며,
-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일반회계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어 2017년도 법정 적립금은 일반회계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이상(195,141천원)인 250,000천원을 적립할 계획임.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50,000천원, 보조금 260,000천원, 예치금 회수 858,216천원과 이자수입 15,000천원으로 총 1,383,216천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계획은 학동천 소하천

정비공사 100,000천원, 자동우량경보시설 보강 및 최신 재난경보 시스템 구축 360,000천원, 재난관리기금 예치 906,216천원과 보조금 반환 17,000천원으로 총 1,383,216천원임.

- 재난관리기금은 법정 적립금 확보, 기금사업의 목적 및 사용 용도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매년 수요조사를 거쳐 사업우선순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옥외광고정비기금(p77)

-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2010. 3. 29. 조례로 제정되었음.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예치금회수 228,797천원, 이자수입 3,400천원, 기타수입 21,000천원으로 총 253,197천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계획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 4,700천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예치 248,497천원으로 총 253,197천원임.

6.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6.1.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개정 2016.1.6.>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군·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6.1.6.>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1.6.>